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7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64)

2. 제안이유
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 제3항 신설
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 가능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제1항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.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3항 신설하는 내용임.
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 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·관리하게 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의류수거함을 깨끗하게 개선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의류수거함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 무단투기장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관리부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7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65)

2. 제안이유

-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
(제6조제3항),
- 신설에 따른 기금 재원 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기타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입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의 재원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4항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
(제6조제3항)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한 내용.
- 신설에 따른 기금 재원 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기타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입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의 재원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4항)

-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제6조제3항)신설에 따른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규정(안 제3조제3항)을 신설하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7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5. 22.
- 회부일 : 2020. 5. 26. (의안번호 : 20-66)

2. 제안이유

- 국민의 책무인 청결유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, 생활 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운영방식 변경 등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·정비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(안 제2조제7호 별표 1)
-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(안 제2조제1호 별표 1)
-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 반영(안 제2조제8호 별표 2)

- 국민의 책무 관련 청결유지 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(안 제10조의2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·징수 규정 삭제(안 제30조)
-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 마련(안 제35조)

4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(국민의 책무)
-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
-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(정의)
-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훈령 제1356호)
-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(환경부, 2019. 4. 8.)

5. 참고사항 <비용추계 내용>

- 대형폐기물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
 - 2019년 폐소형가전제품 배출량 및 처리비용(16,151건, 약 35,000천원)

○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한시적 수수료 감면

지원 구분	계	산출근거
소형음식점만 (민간위탁처리제외)	33,000원 × 5,194개소 × 6개월 =1,410백만원	- 봉투 사용 소형음식점 33,000원 × 7,121개소 × 6개월 =1,410백만원
소형음식점 전체 (민간위탁처리포함)	1,410백만원+466백만원 =1,876백만원	- 봉투 미사용 소형음식점 33,600원 × 2,309개소 × 6개월 =466백만원
음식점 전체 (다량배출사업장포함)	1,410백만원+466백만원+94백만원 =1,970백만원	-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 33,600원 × 466개소 × 6개월 =94백만원

6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환경 변화에 맞게 조례 세부 기준을 보완, 정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제7호 별표1)에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 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하는 내용임.
- (안 제2조제1호 별표1)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하는 내용임
- (안 제2조제8호 별표 2)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 반영하는 내용임.
- (안 제10조의2)구민의 책무 관련 청결유지 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하는 내용임.
- (안 제30조)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

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·징수 규정 삭제하는 내용임.

- (안 제35조)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환경부 분리배출 지침 변경 사항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35조에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 봉투수수료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가 보여주듯이 재난이란 범위가 넓어진 만큼 지원대상이 필요로 할 때 지원이 되어야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사항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,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하는 내용은 업체의 수거비용을 현실화 한 것은 배출된 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에 도움이 될 것임.

-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요령 (제2조제8호 관련) 조항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일상화 되도록 하여 처리비용 절약과 더불어 자원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